

[일련번호 : 5]

# 양 천 구

## 주 의 요 구

**제 목**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부적정

**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과

**내 용**

### 1. 업무개요

■■■■과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2.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 및 제11조의4(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기한 등)에 따르면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고시된 대도시권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제1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내야한다고 되어 있으며, 부담금은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1조의3에 따라 산정한 부담금을 부과한다.

또한 납부 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납부 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내지 않으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 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기한 내 부과 누락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과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과는 아래 2건의 사업에 대하여 부담금 부과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① 목동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목동 557번지 일대)

㉮㉮과는 2023. 9. 13. 사업시행계획 인가 통보된 ‘목동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목동 557번지 일대)’에 대하여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법정 부과기간: 2023. 11. 12.까지)에 부과하여야 하나 정해진 기한 내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이후 2025. 3. 25. 사업시행계획(경미한)변경신고 처리 통보(서울목동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발생에 따라 2025. 4. 18.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38,062천원이 부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② 신정4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정비사업(신정동 1200번지 일대)

㉮㉮과는 2024. 7. 22.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처리되고 2024. 7. 25. 통보된 ‘신정4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정비사업(신정동 1200번지 일대)’에 대하여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기한(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을 준수하지 않아 법정 부과기간인 2024. 9. 20.까지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약 11개월이 경과한 후인 2025. 6. 27.에 부담금 누락분 부과 관련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사업시행자의 의견제출 등 절차를 거쳐 2025. 8. 27.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273,151천원을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 1]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기한 미준수 내역

연번	사업명	사업시행자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부과기한 (60일 이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부과일	부과금액 (천원)	지적사항
1	㉮㉮ 사업	㉮㉮조합	2023.9.13.	2023.11.12.	2025.4.18. (사업시행계획 변경일: 2025.3.25.)	38,062	사업시행인가 60일 이내 부과 누락
2	㉮㉮ 사업	㉮㉮조합	2024.7.22.	2024.9.20.	2025.8.27. (누락분 부과 사전통지 등: 2025.6.27.)	273,151	사업시행인가 60일 이내 부과 누락

#### 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독촉 처리 부적정

■■■■과는 2023. 4. 24. 신월가로주택정비사업(신월동 48-7번지 일대) 관련 사업시행계획 인가 통보에 따라 2023. 6. 7. 신월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35,418천원을 부과하였다. 이후 납세의무자인 동 조합이 납부기한(2024. 6. 7.)까지 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자 ■■■■과는 2024. 6. 14. 본세 35,418,000원과 가산금 400,880원에 대한 납부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2024. 6. 17. 내부결재(■■■■과-56851) 후 고지서를 발송하였다.

하지만 해당 독촉고지서는 납부기한을 고지서 발부일과 동일한 2024. 6. 14.로 설정하여, 관련 규정에서 정한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로 한다’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독촉고지 자체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재산압류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리는 압류예고 통지 또한 누락하는 등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위 독촉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과는 체납처분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해당 교통시설부담금은 2025. 4. 23.에 이르러서야 본세 35,418,000원과 가산금 1,062,530원에 대한 재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가 이루어졌으며, 납세의무자인 신월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2025. 9. 11.에 이를 납부하였다.

[표 2]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독촉 부적정 내역

연번	사업명	사업시행자	최초과세일	최초납부기한	독촉고지일	독촉납부기한	지적사항
1	○○사업	■■■조합	2023.6.7.	2024.6.7.	2024.6.14.	2024.6.14. (부적정)	납부기한 부적정 및 재산압류예고 통지 누락

####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

■■■■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 5. 조치할 사항

##### ■■■■과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